풀러턴 교육구
교육구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DELAC) 정관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교육구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이며, "DELAC" 또는 "자문 위원회"라고도 한다.

제2조
목표

DELAC의 목적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자원의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내어 교육구의 영어 학습자 (EL)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DELAC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한다.

- 학생 성취를 위한 단일 계획을 고려한 EL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구 마스터플랜 개발(5 CCR 11308[c][1])
- 학교별로 교육구 전체의 요구 사항 평가 실시 (5 CCR 11308[c][2])
- EL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구 프로그램, 목표 및 목적 수립 (5 CCR 11308[c][3])
- 해당 교사 및 교육 보조 인력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계획 개발 (5 CCR11308[c][4])
- 연간 언어 인구 조사 보고서 관리 (5 *CCR* 11308[c][5])
- 교육구의 재분류 절차 검토 및 의견 제시 (5 *CCR* 11308[c][6])
- 부모 및 보호자에게 보내야 하는 서면 통지문 검토 및 의견 제시(5 CCR 11308[c][7])

이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DELAC에 교육구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교육의 목적과 본 규정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 조정 및 평가 기구이며, 위원의 서면 동의 없이 여기에 명시된 서비스 이외의 어떠한 금전, 재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제3조

위원

제 1항. 구성

교육구의 필요와 자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회원을 확보하고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부모를 최대한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DELAC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DELAC의 전체 회원 중 51% 이상은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모로 구성되어야 한다.
- DELAC의 나머지 회원에는 교육구에 거주하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 구성원이 포함된다.

모든 DELAC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2항. 선출

위원은 해당 연도 두 번째 회의에서 공식 선출되며, 선출된 위원은 다음 달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위원은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는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어야 한다. 위원 선출은 인종, 종교, 성별, 민족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어떠한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DELAC 위원으로 추천되었거나 위원이 되기를 직접 요청한 사람은 투표 시점에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 3항. 임기

DELAC의 모든 위원은 선출된 연도 동안 임기를 수행한다.

제 4항. 의결권

선출된 각 위원 또는 그 대체 위원에게는 한 표의 투표권이 주어지며, DELAC 투표에 제출된 각 안건에 대해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제 5항. 자격 상실

위원은 대표하는 지역의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대표로 선출된 단체 또는 조직과의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더 이상 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회의 및/또는 임시 회의에 연속 3회 불참 시 자격을 상실한다.

제 6항. 위원 자격 양도 금지

자문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양도할 수 없다.

제 7항. 대리인

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대체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대리인이 투표권을 가지며, 대리인 참석 시 본 조 제5항의 영향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제 8항. 사임

모든 회원은 영어 학습자 서비스 부서에 서면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DELAC 회의에서 사임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
임원

제 1항. 임원 구성

DELAC의 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4명으로 구성된다. 모든 학교 ELAC 선출 위원은 직책에 임명될 수 있다.

제 2항. 선출 및 임기

DELAC 임원은 제2차 DELAC 회의에서 선출되며, 선출된 임원은 선출된 2년 동안 그리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모든 임원은 위원 자격을 유지하는 한 재선될 수 있다.

제 3항. 결원

위원 중 공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 서한을 발송하여 남은 임기를 채울 새로운 회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다. 커뮤니티 구성원 중 공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위원은 명단에서 삭제되며 추가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임기의 잔여 기간 동안 공석이 생기면 위원회는 정해진 선거 절차를 통해 해당 직책의 공석을 채울 수 있다.

제 4항. 위원장

위원장은 DELAC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에 제출되는 모든 서신, 보고서 및 기타 통신문에 서명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 직책에 수반되는 모든 직무와 위원회가 수시로 정하는 기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DELAC 위원장은 영어 학습자 또는 재분류 학생의 부모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교육구 직원이 될 수 없다. "면제" 직책을 제외하고 위원장은 교육구 직원이 될 수 없다.

"면제" 직책이란 교육구에서 수업 또는 프로그램 결정과 관련 없는 직책(예: 사무원, 오피스 매니저, 청소부, 버스 운전사, 또는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학부모를 의미한다. 이러한 학부모도 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

제5항. 부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무는 위원장이 부재중인 경우 위원장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의장 또는 DELAC이 수시로 지정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제5조
회의

제 1항. 정기회의

DELAC은 9월 중 어느 금요일에 회의를 갖는다.11월/12월, 2월, 4월. 회의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며, 교육 서비스 및 DELAC 선출직 대표들이 다음 학년도 시작 전 5월에 회의 일정을 정한다.

제 2항. 장소

DELAC은 교육구가 제공한 시설에서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제 3항. 회의 공지

모든 회의는 공지되어야 한다. 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안건과 날짜, 시간, 장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공지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각 학교에 이메일로 발송되어야 한다. 공식 안건은 각 회의 72시간 전에 각 학교와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www.fullertonsd.org> 교육구 부서 > 영어 학습자 서비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공지 기간을 정지할 수 있다.

제 4항. 제한 사항

DELAC 회의에서는 위원장이 예외를 허용하거나 승인된 동의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 어느 누구도 같은 토론 주제에 대해 한 번에 5분 이상 말할 수 없다.
- 보고 시간은 회의 공지 일정에 더 긴 시간이 서면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15분으로 제한된다.

제 5항. 의결

DELAC의 모든 결정은 참석 위원의 50% + 1의 찬성 투표로 이루어진다.

제 6항. 정족수

위원회 전체의 최소 50% + 1이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체 위원회의 의결이 성립한다.

제 7항. 회의 진행

DELAC의 모든 정기 및 임시 회의는 DELAC 정관에 따라 진행된다. 회의 진행에 사용되는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참석자를 위해 자격을 갖춘 통역사가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통역을 제공한다.

제 8항. 이사회 보고

DELAC 위원장 및/또는 교육구의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 책임자는 매년 정기 회의 또는 특별 회의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에서 이사회에 구두 및/또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개정

정관은 적절한 동의안을 통해 내용이 제안된 경우,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50% + 1명의 찬성 투표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이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필요하다.

제7조
예절

DELAC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비방하는 발언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는 이러한 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을 경우, 즉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장 조치될 것이다.